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시 보

제2557호

2026년 10월 23일 (금)

차 례

고시 · 공고

○ 파주시 고시 제2026-410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····· 1

○ 파주시 공고 제2026-2759호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공람공고 ····· 2

회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파주시 고시 제2026-410호

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

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(농지성토)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"사고지"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23일

파 주 시 장

1. 고시취지: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(절·성토 등)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산읍 내포리 785번지에 대하여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4에 따라 "사고지(불법성토)로 등재함.

2. 사고지 조서(지역·지구 등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)

구분	명칭	위치	지목	면적(㎡)	비고
1	사고지 (불법성토)	문산읍 내포리 785	전	1,997	농지불법성토

3.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: 고시일로부터
4.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: 원상복구 완료시
5.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"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

파주시 공고 제2026-2759호

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공람공고

파주시 고시 제2020-170호(2020.06.30.)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제2023-280호(2023.07.20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23.

파 주 시 장

1. 공람내용

○ 시행자: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윤명자)
○ 주　소: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17, 401호(아동동, 보광빌딩)
○ 종　류: 재개발사업
○ 명　칭: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○ 위　치: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-36번지 일원
○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주요내용
- ▸ 파주시 고시 제2025-345호(2025.07.07.)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사항 반영하여 자금계획 변경
  변경 전 : 847,321,480,000원 / 변경 후 : 854,351,699,000원
- ▸ 조합 총회 의결사항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
  변경 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60개월 / 변경 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120개월
- ▸ 정비구역 미조성 도로 편입,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및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
  [종전 변경 시 의제 누락에 따른 필요반영]
- ▸ 건축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
  변경사유 : 단위세대 조정 / 주동 층고 및 지하 층수 조정 / 주민공동시설 내부 변경

○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
2. 공람 장소 및 기간

○ 장　소: 파주시청 주택과(☎031-940-4775)
○ 기　간: 2026년 10월 23일 ~ 2026년 11월 6일(14일간)

3.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

○ 기　간 : 2026년 10월 23일 ~ 2026년 11월 6일(14일간)
○ 방　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

※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,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(부서)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